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162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7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17. 10. 24.

II. 제안이유

-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부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이 있어, 관련 조례를 함께 일괄적으로 개선·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,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순화하여 교육수요자와 시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어문규정에 따라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표현과 행정 용어 순화(안 제1조 외)

- 어문규정에 따른 맞춤법과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 외)
-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법령명 표기 정비(안 제1조 외)
-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(안 제8조 외)
- 조직개편 등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·부서의 명칭 개정사항 반영(안 제14조 외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 [별첨1] 참고.
3. 기 타 :
 - 입법예고(2017. 9. 21. ~ 9. 29.) 결과 : 의견 없음.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 -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.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62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정부조직법」 등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다수의 교육청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주요 정비사항에 대한 검토

- 동 조례안은 총 24개 조문으로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」 등 교육청의 교육·학예에 관한 24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기술상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안 제18조에서 ‘행정자치부장관’을 ‘행정안전부장관’으로 하였으며, 안 제1조, 제5조, 제6조, 제13조, 제22조에서 ‘해축’을 ‘위축 해지’ 또는 ‘사임’으로 순화하는 등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순화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합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
다만, 안 제13조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의 개정은 개정조문을 잘못 표기한 오류가 있는바, 안 제13조 중 ‘제42조제3항제6호’를 ‘제42조제2항제6호’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계 법령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자치단체의 장" 또는 "시·도지사"는 "교육감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사무"는 "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"로, "자치사무"는 "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"로, "행정안전부장관"·"주무부장관" 및 "중앙행정기관의 장"은 "교육부장관"으로 본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